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6호
- 다. 제출일자 : 2018. 8. 16
- 라. 회부일자 : 2018. 8. 21

2. 제 안 사 유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안 제4조)
- 나.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안 제4조,

제8조)

다.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안 제8조제2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8. 5. 24 ~ 6. 1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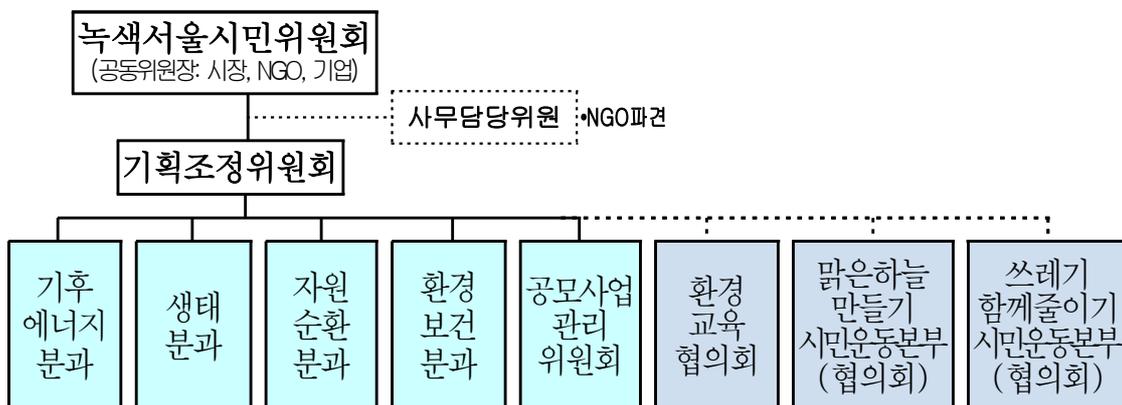
- 본 조례안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현황

- 현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위원회 구성은 3명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환경교육협의회 등 3개 협의회로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되어 있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2)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관련(안 제4조, 제8조)

- 현행 조례 제2조제6호는 위원회 기능 중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교육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8조2(기타 협의회의 설치)를 준용하여 ‘환경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분과위원회는 당초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었지만(11.3.17~13.7.31), 2013년 동 조례 개정으로 환경교육 분과위원회가 삭제되고 현행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와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환경교육협의회’를 대체하여 별도의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조례에 규정·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되며, 이에 따른 위원 수 증가는 없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현 행	개 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생태분과위원회 □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분과협의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생태분과위원회 □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p>환경교육협의회를 분과위원회 체계로 대체하고 조례에 규정</p>

- 분과위원회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주요 예>

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조정 사항
기후·에너지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가
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
자원순환	자원순환문화 확산,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추가
환경보건	대기질 개선 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기후·에너지분과위로 기능 조정), 석면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

3)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관련 (안 제4조)

- 현행 조례 제4조는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 이후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은 연말 정기회에서 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을 단순 보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음.
- 실제 동 위원회가 주요 기능인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외에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정산은 기후환경본부 내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위원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다른 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조례에서도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동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유사 위원회의

경우도 감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적인 예산집행과 위원회 활동 평가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안 제4조와 같이 감사 선임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타 조문 정비 관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내용 중 다른 조례의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주요 예>

현 행	개 정
자	사람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기타	그 밖에
~ 내지 ~	~ 부터 ~ 까지
~ 아니한다	~ 아니하다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